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 용 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 이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2015. 7. 30.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서 적용대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칙을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전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여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피해를 보고 지역정비사업의 진행이 차질을 빚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